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873
----------	-------

발의연월일 : 2026. 10. 13.

발 의 자 : 김문수·이광희·민병덕
양부남·한준호·박균택
조계원·이강일·김우영
김남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가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규명조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토대로 희생자 및 유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및 제적 관련 전산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대조·분석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제적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련 전산정보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등)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을 위한 조사를 위하여 「사회보장기
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
템”이라 한다) 또는 법률 제8435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른 제적부등에 관한 전산정보를 관리하는 정보시스
템(이하 “제적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거나 관할 업무시스
템과 해당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료 또는 정보와 그
범위, 처리 목적·방식,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보유기관 등을 특정
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법원행정처장과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처리한 전산정보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7조의2(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등)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을 위한 조사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법률 제8435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른 제적부등에 관한 전산정보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제적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거나 관할 업무시스템과 해당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료 또는 정보와 그 범위, 처리 목적·방식,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보유기관 등을 특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법원행정처장과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처리한 전산정보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